





소득

1. 자립수당	28
2. 자립정착금	30
3. 디딤씨앗통장(CDA)	32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34

02

소득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 미포함)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지원근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 자립수당 지원 중인 사람이 재보호조치 시 자립수당 중지 처리
(재보호 종료 시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재개)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 2. 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 복귀한 경우
 - ②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 원 자립수당 지급,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신청방식**
 - ①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 제출
 -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가능

② 온라인 신청: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

※ 대리인 신청 불가

③ 우편 및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해외유학 시 재학증명서, 군입대 시 군입영사실 확인서, 질병시 병원입원확인서 등)

●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 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금융감독원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 수료증(26년 6월 중 도입)**** 중 택 1부

* 전국 40개 지사(부록 8번 참고)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여 희망출발 재무 상담(대면, 영상 상담 가능) 후 확인서 발급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 온라인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서 '보호종료아동(예비자립준비청년) 온라인 자립교육 과정' 수강 후 수료증 발급

②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시스템상 보호종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
 - ※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급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통장 사본 추가 첨부 필요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자립준비청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립정착금

-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 2. 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모두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은 주거안정을 위한 '**종갓돈**'이자 불특정한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며, 자립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대상:**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 자립정착금 수령자가 재보호조치된 경우 재지급 금지
 - ※ 조기종료 후 원가정복귀 시 지원 제외(다만, 지자체 판단 하에 지급 가능)
- **지원내용:** 1인당 1,000~2,000만 원(지역별 금액 부록 참고)
 - ※ 자립정착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이 원칙임
 -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 ①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자가 18세에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경우, 만 18세가 된 때의 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② 재보호조치된 경우, 재보호종료된 때의 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중복 재지급 불가, 자립정착금 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

●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단위: 만 원)

구분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서울	2,000
부산	1,500
대구	1,000
인천	1,000
광주	1,000
대전	1,500
울산	1,000
세종	1,000
경기	1,500
강원	1,000
충북	1,000
충남	1,000
전북	1,000
전남	1,000
경북	1,000
경남	1,500
제주	1,500

* 2026년 1월 지자체 조사 기준

● 신청절차

- ①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정착금 신청문의
-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설을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신청
 - ※ 가정위탁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로 직접 신청 가능
- ③ 사용계획서 확인 및 심사
- ④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립정착금 입금
 - ※ 자립정착금 지급 시 금융교육 또는 재무상담 이수 확인 후 분할 지급(권고)
 - ※ 단,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일시에 기준금액 전체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 ※ 일시금으로 지급 시 국민연금공단의 재무상담 이수 권고

디딤씨앗통장(CDA)

디딤씨앗통장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2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10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준비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대상

-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18세 미만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아동:**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
 -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 가입 이후 가정복귀 또는 탈수급하였더라도 지원 유지

● 지원기간: 가입 시부터 18세 미만까지

※ 정부(지자체)의 매칭 지원은 18세 미만까지이나, 본인의 적립 계좌는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 가능

●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

※ 추가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

● 만기지급 및 조기인출

구분		요건	지급 구분		비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 해지	만기 해지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	24세 이후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 후 적립 예금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 용도 충족	○	X 만기 해지 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 조기 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	X 만기 해지 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 5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X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적립금 사용 용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 의료, 결혼 등

● 문의

- 국가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1670-1834)
- 통장개설 및 해지문의: 개별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급여 항목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층화(생계·의료·주거·교육)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 **신청권자:**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처리기한:**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202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1,025,695	1,679,717	2,143,614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관련 문의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교육급여: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